

연구지원인력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지침

제정 2014.1.1.

개정 2014.6.1., 2018.10.1., **2021.12.30.**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외부연구과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인력(이하 '연구지원인력'이라 한다)에게 연구개발능률성과급(이하 '성과급'이라 한다)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급대상) ① 성과급의 지급대상은 연구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인 산학협력단의 연구 지원인력을 대상으로 한다. (개정 2018.10.1)

② 연구지원인력이란 연구과제협약, 연구과제관리, 연구성과물관리(지식재산권, 저작권 및 기술이전 등), 구매, 정산, 회계, 예산지원인력을 칭한다.(개정 2018.10.1., **2021.12.30.**)

③ 연구지원인력이 동명대학교 정규직원인 경우 또는 사업단 소속 직원은 제외한다.(개정 2018.10.1)

제3조(지급기준) ①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원규정에 의거하여 성과급 지원금액 지원범위 이내에서 연구지원인력의 성과급을 지원한다.(개정 **2021.12.30.**)

② 산학협력단장 및 해당팀장은 소속 연구지원인력에 대해 연2회(6월말, 12월말) 6개월 단위로 개별성과평가 한 후 평가등급별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.(개정 2018.10.01.)

③ 개별성과평가항목은 연구지원 및 관리성과, 연구관리 지식수준, 업무추진력 및 의사결정 능력, 문제해결능력 및 업무개선능력, 성실성 및 책임감 총 5개 항목으로 평가하여 합계점수에 따라 평가등급을 부여한 후 이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한다.(개정 2018.10.1., **2021.12.30.**)

④ 평가 점수합계에 따라 평가등급은 90점이상은 A등급, 80점이상 90점미만은 B등급, 70점이상 80점미만은 C등급, 70점 미만은 D등급으로 구분한다.

⑤ 위 ①항과 별도로 '연구지원 업무개선' 및 '과제수주에 기여도' 등 산단의 간접비수혜액 증가에 기여도가 높은 연구지원인력은 해당성과에 대하여 별도로 개별 평가하여 성과급을 지원할 수 있다.

⑥ 성과평가 결과는 연구지원인력의 근무성적 평가 및 재계약 여부에 대한 자료로 반영할 수 있다.

제4조(지원금액) 성과급 지원금액은 성과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그 금액은 별도로 정한다.(개정 2014.6.1.)

제5조(지원시기) 성과평가를 완료한 후 익월에 지급하며 해당금액은 근로소득에 합산한다.

제6조(제한조건)

① 산학협력단 정규성과급외의 인센티브와 중복으로 지급할 수 없다.

② 근무년월이 성과산정기간에 못 미칠 경우 월할계산하며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.(개정 **2021.12.30.**)

부 칙

1. (시행일)이 지침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성과급 산정은 2013년 6월1일 이후 교외연구과제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1. 본 개정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 한다.
2. (경과조치) 성과급 산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교외연구과제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1. 본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 한다.
2. (경과조치) 성과급 산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교외연구과제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1. 본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성과급 산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한다.

[별지1호]

연구지원인력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평가표

평가지침		1. 평가자는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평가한다. 2. 각 평가요소는 상호 연관시키지 말고 독립적으로 평가한다.					
소속	산학협력단	부서명		직급		성명	
담당직무		평가기간	년 월 일부터	년 월 일까지	소속(업무)		

평정요소	구분	배점	평가(해당란에 √ 표)					평가점수
			탁월	우수	보통	부족	미흡	
연구지원 및 관리성과		30	30	24	18	12	6	
연구관리 지식수준		20	20	16	12	8	4	
업무추진력 및 의사결정능력		20	20	16	12	8	4	
문제해결능력 및 업무개선능력		20	20	16	12	8	4	
성실성 및 책임감		10	10	8	6	4	2	
계 (100점 만점)		100						

※평가척도는 탁월(1.0), 우수는(0.8), 보통(0.6), 부족(0.4),미흡(0.2)으로 5개척도로 각각의 비중은 괄호()안의 수치로 한다

특이사항 및 평정자의 의견	
-------------------	--

평가의 결과는 피평가자의 성과급 지급에 반영됨에 따라 본인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하였음을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평가자 소속 _____ 직 위 _____ 성명 _____ (인)